입법동향 – 2025년 제2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1
2.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5
3.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 13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7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19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 입법례 ····· 25
2.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 36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45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51
2.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명칭 변경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54

Ⅵ. 법령 해석 사례

1.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 ····· 57
2. 폐기물처리업자 행정사무 감사 대상 기관 포함 여부 ····· 62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5. 2. 7., 충청북도조례 제5250호, 2025. 2. 7., 제정】

□ 상임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7조).

나. 지원사업 및 치유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제.9조～제10조).

다. 비용지원 및 비밀 엄수, 업무 위탁에 대해 규정함(제12조～제14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4곳(충북, 부산, 충남, 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2025년 1월 기준 도내 청소년 인구수는 263,110명이며,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6.1%, **우울감 경험률**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KBS 뉴스 2025. 1. 20.)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5. 2. 7., 충청북도조례 제5250호, 2025. 2.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
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엄수)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5.2.7. 조례 제5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24., 서울특별시조례 제9483호, 2025. 1. 3.,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됨.

◇ **조례 제정을 통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 규정함(제5조).

다.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제7조~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곳(서울)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2024년 1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5. 1. 24.)으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유해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년도: 8,712백만원, '23년도: 9,582백만원(환경부 사전정보공표 자료)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24., 서울특별시조례 제9483호, 2025. 1.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한강공원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사무위임)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483호, 2025.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정]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2. 4., 경상남도조례 제5811호, 2025. 2. 4., 제정】

□ 상임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우수야영장 지정 및 야영대회 개최, 야영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9곳(경남,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전국 야영장 수는 4,100여 개로 이 중 전북에 등록된 야영장 수는 172개소에 달하고, 캠핑인구는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전국적으로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관광공사 2024. 12. 10.)

○ 캠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 문화 정착 및 체류형 관광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2. 4., 경상남도조례 제5811호, 2025.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제1호의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4.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경상남도 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하로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5.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5. 1. 17., 경기도조례 제8262호, 2025. 1. 17., 제정】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경기도 내 공립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과 폐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6조).
다.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2곳(경기, 서울)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국가 차원의 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교훈, 교가* 등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한 음반제작업체가 전국 초중고교의 교가를 무단으로 음원사이트에 등록하여 음원수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2015. 2. 9. 중부일보)

○ 도내 **공립학교의 상징물에 대한 저작권 등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범위 규정, 외부 사용자의 사용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5. 1. 17., 경기도조례 제8262호, 2025. 1.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경기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262호,202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제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국토교통부령 제1447호, 2025. 2. 7., 제정】

□ 제정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신청**에 따른 설명자료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현 행	제 정
<신 설>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1. ~ 5. (생략) 6.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료**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나. (생략)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없음

○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 있음.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 시장·군수 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우리 도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도심 복합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부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20조의2(지도·감독) ① (생략)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 등

○ 현재 도내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6개 기관임.(대안교육기관은 위 법령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함.)

○ 상위법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관련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경제부지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안교육기관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도지사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

【국회도서관, 2025-1호(통권 제264호), 최창수】

◇ 2025년 1월 미국 제119대 연방의회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2024년 11월 연방의회 및 대통령 선거결과,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기존 민주당에서 공화당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미 관계에서 외교·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현재 시행 중인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전의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이러한 규정 없이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등 향후 제정되는 「국방수권법」에 이러한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우리의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관련「국방수권법」의 입법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제어 미국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정책

□ 도입

❍ 2025년 미국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모두 공화당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1월 미국 제119대 연방의회가 개원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 지난 **2024년 11월 상·하원 의원 선거 결과**, 제119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제118대 연방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 새로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행보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이 불확실하고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증액 주장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2019년 1기 행정부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였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24년 대선 유세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에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선거운동 내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하였다.
-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가 국정의 제1원칙**임을 분명히 하였고,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Power)으로 언급**하였다.
- **2025년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를 해결할 필요성을 표명**하였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하‘특별협정’)에 따라 책정**된다.

- 특별협정은**1~6년 주기로 체결**되며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매년 분담액을 결정**한다.
- 기존 6년간(2020~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제11차 특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 향후 5년간(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2차 특별협정이 2024년11월 4일 공식서명 되었고, 우리 국회가 11월28일 협정 비준에 동의하였다.

❍ 제12차 특별협정에 따라 **2026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년도 분담금에‘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한미 양국은 합의하였다.

❍ 미국에서 국제조약은 연방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협정은 연방 상원이 비준해야 하는 협정이 아니다.

- **특별협정은** 우리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체결하는 행정협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위한 계약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제12차 특별협정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국방수권법」

❍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동법’)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일련의 **연방법률로 구성**된다. 위에서 **살펴본특별협정(SMA)은** 한미 **행정부 간 행정협정**이지만, **「국방수권법」은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동법은** 해당 회계연도(직전 년도 10월 1일~해당 연도 9월 30일)에 **1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공식 명칭은 「OOOO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OOOO)이다.

-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므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
- 특정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효력은 **9월 30일에 종료**되며, 이후 **10월 1일 부터는 다음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적용**된다.
- 통상적으로 매년 4~6월에 발의되어 12월 말에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된다.

❍ 동법은 **아래의 주요 사항들로 구성**된다.

- **국방 예산**: 매년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예산 규모 책정
- **국방 정책**: 국방전략과 정책 방향 설정- 군대 인사: 군인 급여 및 인사 정책 결정
- **군사 장비**: 무기 시스템 및 군사 장비 조달 계획 승인
- **동맹국 관계:** 주요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 방침 명시

❍ **동법의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책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 해당 회계연도 국방부의 군인, 장비, 군대운영, 국방연구개발 관련 자금 등에 관한 연간 예산·지출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군사적 대비, 방위전략, 국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국방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정책 감독 권한을 가진 **상·하원 군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가 동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한다.

❍ **「국방수권법」**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을 담고 있어, 동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 최근 2024년 12월 제정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크게 7개 부(divisions)로 구성**된다.
- **제1부**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부 이하 **제13편(기타 외국과의 관계)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아래 표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국방수권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권 행정부, 미국 연방의회 회기별 의석수, 다수당 지위 관련 변동사항을 각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및 주한미군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 1 2017~2026 미 행정부·연방의회 변동사항 및 「국방수권법」 연혁

연도	행정부	연방의회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관련 규정
2017~2018	트럼프 1기 행정부	제115대				•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연방의회는 예산편성권에 따라,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
		상원	공화당 51	민주당 47	무소속 2		
		하원	공화당 241	민주당 194			
2019~2020		제116대				•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상원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 2		
		하원	공화당 199	민주당 235			
2021~2022	바이든 행정부	제117대				•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연방의회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인식함
		상원	공화당 50	민주당 48	무소속 2		
		하원	공화당 212	민주당 222			
2023~2024		제118대				•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 •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상원	공화당 49	민주당 47	무소속 4		
		하원	공화당 222	민주당 213			
2025~2026	트럼프 2기 행정부	제119대				-	-
		상원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 2		
		하원	공화당 220	민주당 215			

□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 비용을 지출하는데 **해당 회계연도의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하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이 처음 명시**되었으며, 이후 제정된 **「2020~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기존 조문을 일부 개정** 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표 2 주한미군 관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원문 및 번역문

원문	번역문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Section 1258. Limitation on use of fund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serving on active duty who are deployed to the Republic of Korea.	**제1258조. 대한민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총 인원수를 감축하기 위한 자금 지출 제한**
None of the fund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by this Act may be used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serving on active duty who are deployed to the Republic of Korea below 28,500 until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of Defense certifies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the following:	동법에 따라 세출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자금도 대한민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총 인원수를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 위와 같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번역문
(1) Such a reduction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2) The Secretary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such a reduction.	(1) 이러한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2)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감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적절하게 협의하였다.

❍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동법에 따라 승인된 **국방비 예산이 한국에 배치된 현역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연방의회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아래 2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그 사실이 증명된 날로부터 **90일이후 국방비 예산을 주한 미군감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주한 미군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에서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음**.
-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과 적절하게 협의**하였음.

❍ **위 조문은** 미국 연방의회가 **연방헌법을 위배하지 않고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연방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지만**, **연방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세출법안을 통해 **국고자금 지출을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 이에 **주한미군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회계연도 국방비 사용을 제한**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 위 조문은 **연방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 결국 **연방의회는** 위헌 소지가 있어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지만**, 연방의회의 **예산 편성권한**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해당 회계연도 국방비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다.

□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2022~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기존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되었던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연방의회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규정** (이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규정')을 신설하였다.

❍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처음 명시되었으며, 이후 「2023~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기존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다.

❍ **가장 최근 제정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관련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표 3 주한미군 관련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원문 및 번역문

원문	번역문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Section 1311. Sense of Congress on Defen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제1311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에 대한 연방의회의 인식**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continue efforts that strengthen United States defen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so as to further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by	연방의회는 국방부장관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를 위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

원문	번역문
...	...
(2) 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Republic of Korea, enhancing mutual defense base cooperation,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2)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에 따라,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동맹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호 기지방어 협력을 증진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역량을 사용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	...

❍ 위 조문에서 **연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 일환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에 따른 아래 3가지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
- **상호방위 기지협력(mutualdefensebasecooperation)증진**
- 미국의 전방위적 역량을 동원하여 **확장억제(extendeddeterrence) 정책 지속**

□ 요약 및 결론

❍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고 군사적 정책과 전략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다.

- 최근 7년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관련 사항이 담겨있어, 그 현황과 변경 사항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 집권 행정부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주한미군 관련 사항이 「국방수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이 명시되었다.

- **연방의회**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권한 행사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조치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없다**.
- 다만, **연방의회는** 예산편성 권한에 따라 행정부가 해당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다.
- 즉, 연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을 매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에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조치를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었다.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활동을 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연방의회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장관에게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 **향후 4년간(2025~2028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사항의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법이므로, 향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정 등 주한미군 관련 사항의 입법 동향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이 향후 제정될 **「국방수권법」에 부활·명시**된다면, 한미 관계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외교·안보적 불확실성이 일부 줄어들 수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조치를 법적으로 제한**할수 있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시 이에 대한 협상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에 더하여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이 추가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미국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공화당 중심으로 개편된 점등을 고려할때, **위 2개의 규정이 동시에 명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 또한, 위 2개의 규정이 하나의 「국방수권법」 내에 함께 명시된 적이 없고 위 2개의 규정은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규정이므로, 이 중 하나의 규정만 명시될 수도 있다.
- 위 2개 규정 중 어느 규정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다른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등 향후 주한미군 관련 사항의 제정 및 개정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수권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추천 자료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ive Notable Items for Asia Watchers in the 2025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4.12.16.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Primer: The NDAA Process, In Focus, 2025.1.6.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2024.10.25.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Korea Relations, 2022.2.24.

2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23호, 통권 제261호, 심소연】

◇ 제조물은 전통적으로 유체물 등 동산에 한정되어 있고, 대량생산 경제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조물책임의 기본 원리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이 과학·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물의 정의와 책임 법리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가 핵심 기술로 사용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 이에 **EU집행위원회는 1985년에 제정**하여 약 40여 년간 시행해 온 **「제조물책임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 지침안을 2022년 9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후, EU 기구 간 협상을 거쳐 **2024년 10월 23일에** 유럽의회 의장과 EU이사회 의장이 최종 합의안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되었다.

◇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은 제조물의 정의에 AI 등 SW를 포함**하도록 하고, 손해의 범위도 **기존의 신체적, 물적 손해를 넘어 정신적 손해 및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까지 확장**했다. 또한, 제조사의 제조물에 대한 통제 범위가 제조물의 시장 출시일이나 서비스 투입일 이후에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결함의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의 등장**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입법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주제어	유럽연합/제조물책임/제조물의 정의/경제운영자/증거공개/인과관계의 추정

□ 도입

❍ 1985년에 제정된 EU의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이하 구 PLD)은 1999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조물의 생산, 유통,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구 PLD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 제조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예: 소프트웨어(이하 SW)가 유체물에 내장되지 않고 독립된 경우도 제조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 등)
- 손해배상청구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결함이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사례(예: 의약품 또는 AI 기반 제조물 등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책임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가 존재한다는 점
- 500유로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 이에 **EU집행위원회는 구 PLD에 대한** 평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 개최, 제조물책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심층 연구를 수행하는 등 **5년 동안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28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AI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청구에 적용될 수 있는 AI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후 EU의 공동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1독회를 거쳐 수정된 합의안에 2024년 10월 23일 두 기구의 장이 공동 서명함으로써 개정된 PLD는 EU 관보에 게재된 2024년 11월 18일로부터 20일 후인 2024년 12월 8일에 발효된다.

그림 1 EU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제안 과정



※ 출처: Stefano De Luca. "New Product Liability Directive."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12.2023).

❍ 2024년에 개정된 EU의 「제조물책임지침」(이하 신 PLD)은 총 4장 24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경제 운영자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공통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원국들은 **신 PLD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신 PLD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제22조).

표 1 구 PLD와 신 PLD 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구 PLD	신 PLD
제조물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동산 및 전기	디지털 제조파일, 원자재 및 SW 추가
손해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해,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추가
책임의 대상	• 제조자: 완제품의 제조업체, 원재료의 제조자 또는 구성 부품의 제조업체와 제품에 자신의 이름, 상표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징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 영업 목적으로 제조물을 제공한 자	• '경제운영자'로 통칭 • 제조자: 제품을 개발,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 제품을 설계 또는 제조하도록 하였거나 그 제품에 제조자의 이름, 상표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징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주문 처리 서비스(fulfilment service) 제공자
증거공개 요청	관련 규정 없음	피해자(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와 관련된 증거를 경제운영자(피고)가 공개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보유
결함 및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관련 규정 없음	경제운영자(피고)가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시, 인과관계 추정 가능
보상 청구 가능 금액 기준	500유로 이상의 제조물 7천만 유로 미만의 손해	삭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	동일
	제조자가 제조물을 시장에 출시한 날부터 10년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예외 추가: 피해자가 신체적 손해의 잠복기로 인해 해당 제조물의 시장 출시일 또는 서비스 투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경우, 15년을 추가하여 25년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 주요내용

1. 제조물의 정의, 결함 및 손해 범위의 확대

❍ 신 PLD는 제조물의 정의에 구 PLD가 제조물이라고 규정한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동산과 전기 이외에 디지털 제조파일과 SW[8] 등을 추가하고 있다(제4조제1항). 이는 SW와 콘텐츠가 융합된 서비스 형태를 넘어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SW의

체계가 변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조물이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 또는 EU 법령이나 회원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결함의 평가 시 다음의 <표2>에 언급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제7조).

표 2 제조물 결함 평가 시 고려 요소

구 PLD 제6조제1항	신 PLD 제7조제2항
제품의 외형	제품의 상표 부착, 디자인, 기술적 특색, 구성, 포장, 제품 조립 설명,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제품의 외형과 특징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품의 용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품의 용도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시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후에 계속해서 학습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상호 연결되는 것을 포함하여 제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해당 제품에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영향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시점 또는 제조자가 그 후에도 제품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 제조자가 제품을 관리하지 않게 되는 시점
	안전 관련 사이버보안 요건을 포함한 관련 제품의 안전 요건
	제8조에 언급된 관할기관 또는 경제운영자에 의한 제품의 리콜이나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그 밖의 조치
	제품의 의도된 사용에 대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집단의 특정 요구사항
	해당 제품의 목적이 피해를 막기 위함인 경우, 제품이 그 목적을 이행하지 못할 때

❍ **구 PLD는 손해의 범위를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로 한정**하였으나, **신 PLD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해 및 데이터의 손실과 손상까지 손해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제6조).

2. 책임 주체의 확대

❍ **구 PLD는** 제조물 결함의 책임 주체를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로 한정**하고 있었던 반면에, **신 PLD는** 제조물 결함의 책임 주체를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라는 새로운 용어로 통칭하고, 경제운영자에 **제품/부품의 제조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수입업자/유통업자 또는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해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있다(제4조제15항)

❍ **제조자의 통제 범위 밖**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개조하고 시장에 유통**하거나, **개조된 제품의 사용이 가능하게 한 개인 또는 법인도 제조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제8조제2항). 한편, EU 내에 설립된 **경제운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 아래에서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제8조제3항).**

- 피해자가 유통업자에게 EU 내에 설립된 경제운영자 또는 해당 제품을 공급했던 자체 유통업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
- 유통업자가 이러한 요청을 받고 1개월 이내에 경제운영자 또는 이 제품의 유통업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자체 또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권한이나 통제 아래 행위하는 거래자에 의해 제조물이 제공된다고 **소비자가 믿도록 제조물을 제시하거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유통업자의 책임이 적용**된다(제8조제4항).

❍ 한편, **경제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없거나 파산, 부재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회원국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 지원 대신 기존 보상제도를 이용하거나 국내법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제8조제5항).

3. 증거공개 제도 및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회원국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인(이하 원고)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가 보유한 원고에게 필요한 증거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공개하도록 명령**

한다. 한편, 원고의 보상 요구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이 증거의 공개를 명령**한다(제9조제1~2항).

❍ 또한, **당사자(원고/피고)가 요청한 증거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때, 특히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원국 법원이 고려**하도록 보장한다(제9조제3~4항)

❍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점은 구 PLD와의 공통점**이나,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은 신 PLD에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EU의 신 PLD는 결함의 추정 및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을 구분**하고,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복잡한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원고)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피고의 반박권도 인정**한다(제10조).

표 3 결함의 추정 및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

추정의 종류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
결함의 추정 (제10조제2항)	• 피고가 필수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 피해자가 EU 또는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전 요건을 제품이 준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 피해자가 제품을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 중이었는데, 명백한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제10조제3항)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그 결함과 전형적으로 연결되는 유형이라면,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됨
특정 상황에서 결함/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 추정 (제10조제4항)	• 피해자가 과학적·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결함이나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 가능성이나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 가능성을 입증할 경우

4. 책임의 면제, 경감, 배제 또는 제한 사유

❍ **경제운영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열된 사실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제11조제1항).

- 제조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
- 유통업자의 경우,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
-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시점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유통업자의 경우, 결함이 발생한 이후에 시장에 제공되었거나 그 결함이 시장에 제공된 이후에 나타났다는 사실
- 손해를 초래한 결함이 제품의 법적 요건 준수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시점 또는 제품이 제조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던 기간의 과학적·기술적 지식수준이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
- 부품 제조자의 경우, 통합된 제품의 결함이 제품의 디자인 또는 제조자가 제공한 설명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 제품을 개조한 개인의 경우, 결함이 개조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 **이 지침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당시에 결함이 없었더라도**, 아래의 경우 **경제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한다(제11조제2항).

- 관련 서비스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
- SW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
- 필수적인 SW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의 부족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제품의 실질적 개조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제3자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경제운영자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부인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손해가 **제품의 결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경제운영자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제13조). 한편, 경제운영자가 피해자와의 계약이나 회원국 법률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피할 수 없다(제15조).

5.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확대

❍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책임 있는 경제운영자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제1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제품 출시일 또는 서비스 투입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된다(제17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제품 노후화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운영자에게 무기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적 손해의 잠복기로 인해 구제 절차를 10년 이내에 개시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PLD 개정 초안의** 15년보다 **10년 더 확대된 것**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EU의 입법 의지**가 드러난다.

□ 시사점

❍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정의에 AI 등 SW를 포함하지 않으며 책임 주체의 범위도**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소비자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좁다**. 이에 제조물의 정의, 책임 주체 및 손해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물의 결함 평가 시 고려 사항을 추가한 **EU의 신 PLD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 8개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은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 완화, **제조사에 입증책임 전환 또는**

자료 제출 의무 부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EU의 신 PLD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사에는 추정된 부분을 반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또한, EU의 신 PLD는 신체상 손해의 잠복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5년까지 예외적으로 확대**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책임도 커지는 만큼 **식품, 의약품 등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물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EU 역내 시장 진출 시,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추천 자료

- 김윤명.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2-21-⑩ (2022).
- 이재목. 2022년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내용과 그 시사점.『홍익법학』 제24권 제3호 (2023).
- Stefano De Luca. New Product Liability Directiv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12.2023).
- Gerhard Wagner. Next Generation EU Product Liability – For Digital and Other Products. *Journal of European Tort Law*, vol. 15, no. 2, (2024).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2월 첫째주	행정안전	○외로운 늑대의 귀환 : 연쇄 차량돌진 테러의 평가와 시사점 ○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4) 지역발전지수 = Regional Development Index : RDI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외교통일	○ 북한의 2024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외교 전략 ○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의 배경과 함의 ○ 북한 '적대국가론' 의도를 통해본 '평화공존론'의 한계 분석 ○ 해저케이블 절단의 안보적 위협 ○ 트럼프의 MAGA 복음과 함께 변화하는 미국 ○ 중국의 청국급 간부 교류 사례 분석 및 함의 ○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 일본 방위산업전략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 현황과 함의 ○ 트럼프와 그린란드 : 북극 미·중경쟁 심화 ○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과 지역경제 :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10대 전망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202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래농업 대응 신성장 산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 대체식품 시장 변화에 따른 축산업의 대응 과제
	문화체육관광	○ 콘텐츠 해외 투자유치 전략 연구 ○ 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2월 첫째주	보건복지	○ HIRA 지역보건의료진단 기초연구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
	국방	○ (2025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정세 전망 ○ 트럼프 2기 유럽의 안보 전략 : 동맹론 vs. 자강론 ○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국토교통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효과 및 개선 방안
	환경노동	○ 농산업인력확보를 위한 이주배경청년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
	교육	○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 개선방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미국의 AI안전·신뢰성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CES 2025로 살펴본 글로벌 기술 트렌드 ○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데이터 기반 국제협력 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역할
	법제사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법제사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상법상 규제 개선방안
	국토교통, 행정안전	○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2월 둘째주	보건복지	○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여성가족	○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사례 연구 ○ 인천 가정폭력 실태와 피해지원 강화 방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5년 1분기 전망 ○ 수출기업의 2025년 경영환경 전망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2월 둘째 주	외교통일	○미국의 가자지구 선언의 배경과 함의 ○북한 주민들은 과연 핵을 원하는가? ○인도의 조선업 육성 배경 및 산업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北 노동당 제8기 제30차 비서국확대회의 평가와 전망 ○(2025) 새해맞이 중국의 아프리카 방문 의미와 시사점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 ○트럼프 집권 2기 미중관계 전망과 시사점 ○북한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평가 ○이시바 총리 신년사 함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방안 ○AI 일상화 시대의 위협, 딥페이크 대응 방안 ○(2025) 클라우드 트렌드 ○(2024년 하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24년) 노벨상이 조명한 AI : 경제학상편
	행정안전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국제비교를 위한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범 연구
	국방	○북한 주민의 군대 생활
	국토교통, 행정안전	○뉴 컴팩트시티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입체복합화 방안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탄소중립농업 추진을 위한 바이오투입재 이용활성화 방안 ○노지 원예농업의 스마트화 실태와 과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 행정안전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행정안전	○세종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방안
	정무, 국토교통	○주택시장에서 금융제약이 잠재적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2월 둘째주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정무, 행정안전	○전북지역 부동산PF 유동화증권 현황 및 리스크 점검
2월 셋째주	보건복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교육	○디지털 배지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시 교육발전특구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대전의 교육을 디자인하다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고도화 연구 ○한국 디지털 교육 종단연구 설계 및 실행방안 연구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현황과 지역 주력산업 연계 성장 가능성 탐색 ○글로벌 AI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외교통일	○인도 항만 인프라 개발전략 '사가르말라(Sagarmala)'의 성과 및 시사점 ○미·중 관세전쟁의 함의와 전망 ○新한반도 통일대계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이행방안 : 민생협력과 그린 데탕트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행정안전	○대전시민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방안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격차 실태분석 및 해소방안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경북·대구 인력 수급 전망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기획재정	○KDI 경제전망 : 수정
	국방	○2025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정세 전망 : 러시아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행정안전	○지능화시대, 경북 로컬푸드 혁신과 지속가능성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행정안전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행정안전	○고령자 천만 시대, 경남 시니어 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무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향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소호시장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2월 셋째 주	국토교통, 행정안전	○경기도 대도시권 출·퇴근 광역통행 1시간 실현 방안 연구
	국토교통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2월 넷째 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DeepSeek의 AI 모델과 반도체산업 영향 ○SPRi AI brief (2025년 2월호) : AI브리프 스페셜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현황 분석(2024년 조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본 트럼프 2기의 AI 국가전략
	국토교통, 행정안전	○세종형 통합교통플랫폼 도입방향 연구 ○고내구성 포장 도입 통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개선방안
	외교통일	○브렉시트 5년 : 평가와 시사점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북한 온천군·우시군 사건과 부패의 정치 ○격변기에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성과와 한계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 딩쉐샹 부상의 배경과 의미 ○미일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25) 다보스 포럼 평가 및 시사점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환경노동	○정년 연장에 대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의 세대별 인식 차이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디지털 분야의 탄소 배출과 대응 노력 ○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국내 박사 양성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 ○(특집) 국제 기후·에너지 분석. vol.2025-4호
	보건복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연관성 진단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급 분석과 대응 전략
	행정안전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생활 인구 늘리기 방안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대전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구축방안 기초연구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2월 넷째주	**여성가족**	○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농산물 직거래 유통 실태와 시사점
	환경노동, 행정안전	○(2024) 경기도 연간 고용동향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행정안전	○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현황 및 전라남도 진출 전략
	보건복지, 행정안전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 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산청군, 의견25-0002, 2025. 1. 23.)

□ **질의요지**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그에 관한 기념행사를 하는 사무가 산청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취지는 지리산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술·문화·예술 및 농·임산물의 판촉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산청군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 또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제5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의 요지와 같은 사무는 **산청군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리산’은 산청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참조), 산청군에서 ‘지리산’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지리산의 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먼저 지정한다 하더라도 산청군과 동일한 지리적 특성을 갖는, 즉 **‘지리산’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만약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청군과 다른 날짜에 ‘지리산의 날’을 지정한다면 동일한 명칭과 목적의 기념일과 기념행사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지정·운영되어 **당초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리산’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기념일 지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특정 날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주: 법제처 2019. 3. 13. 회신 의견제시 19-0053; 법제처 2011. 10. 28. 회신 의견제시 11-0238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다. (생 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생 략)

6.·7. (생 략)

2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의견25-0038 2025. 2. 7.)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제5조)** 및 **행정기구 설치·개편 시의 고려사항(제7조)**, **행정기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제안 및 행정기구 축소·통폐합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 한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통폐합 및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지는바(각주: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이미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없었던 행정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각주: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며, **이러한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에는 그 조직편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제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되는바(각주: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10. 29. 의견제시 19-0304, 2017. 8. 23. 의견제시 17-0230, 2013. 11. 21. 의견제시 13-0344 참조).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965, 2025. 2. 24., 기획재정부】

□ 질의요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복권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금 등(이하 "기금등"이라 함)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 조정 결과에 따라 복권수익금 중 기금등에 배분되는 총량(이하 "배분총량"이라 함)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는지?**

□ 회답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 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등의 배분총량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복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기금등에 배분하도록 하여 기금등에 대한 **'배분총량'을 정하는 내용과** ②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금등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하는 내용 등 두 가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배분비율'에 대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총량'에 대하여 가감 조정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복권법 제23조제1항은 기금등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총량과 배분비율을 규정하되,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복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배분총량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유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금등의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배분비율 가감조정제**는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487호로 일부개정된 복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기금등에 일정한 비율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재원활용의 경직·비효율화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기금등의 자금소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등의 '배분비율'에 대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일부개정된 복권법 주요내용 및 2010. 10. 29. 의안번호 제1809704호로 발의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복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금등의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가감 조정을 통해 배분총량이 조정되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많거나 적게 기금등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복권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감 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총량은 복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배분총량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많거나 적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는데, 만약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의 가감 조정에 따라 배분총량도 조정되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많게 기금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이 줄어들게 되고, 공익사업에 대한 배분총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 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등의 배분총량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가운데 기금등에 배분되는 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 배분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생 략)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⑥ (생 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결과
③ ~ ⑦ (생 략)

2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24-0961, 2025. 2. 24.】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기관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각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함)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간위탁단체등"이라 함)을 규정(전단)하고 있는(각주: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후단 참조))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3호 참조), 이하 같음)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으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업무를 대행 받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라 함)(각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가 개인인 경우는 제외함)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각주: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전제함)

□ 회답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 업무를 "대행"받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인데, "대행"이란 행정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310 해석례 참조)으로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과 구별되는 개념**(각주: 법제처 2021. 11. 25. 회신 21-0739 해석례 참조)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등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행"과 "위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문언상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위탁단체등과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구별**되므로,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으로 민간위탁단체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 기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민간위탁단체등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단체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에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비판, 감시, 통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각주: 법제처 2021. 10. 15. 회신 21-0390 해석례 참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한계에 관한 법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판결례 참조), 민간위탁단체등에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 대상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령의 취지에 부합**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생 략)

② (생 략)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